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88

발의연월일: 2021. 12. 30.

발 의 자:정동만·강민국·주호영

김희곤 · 성일종 · 윤창현

조명희 • 이명수 • 전봉민

황보승희 · 조경태(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정비·수리 시 자동차 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고가의 부품 (일명 순정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5년 1월 8일 시행)하여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의 경우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라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및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
질 인증 등) ① (생 략)	질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	<u><</u> 삭 제>
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	
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